

별첨.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사업 자주 묻는 질문(FAQ)

1.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&D 과제를 완료(우수, 보통)한 '주관연구개발 기관'만 신청 가능한가요?

<답 변>

-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&D사업(일부사업 제외*) 완료(우수, 보통) 후,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및 보유한 기업이 신청 대상이며, 중소기업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에만 신청**할 수 있습니다.

* 신청 불가 사업 : R&D기획역량지원사업,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, 인구인력지원사업, 연구장비활용지원사업,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 1단계 네트워크기획지원사업, 산학연 collabo 사업중 1단계 예비연구사업, 기타 예비기획 과제 등

** 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사업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

2. 하나의 신청기업이 여러 개 제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<답 변>

- 신청하는 제품들이 각각 다른 제품이면서 다른 R&D과제 수행에 따른 결과물일 경우 건별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기업은 **1개의 R&D과제 결과물에 대해, 여러 규격(모델)을 1개 신청과제에 포함하여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** 규격별 개별 신청은 불가합니다.

< 신청 예시 >

기업	신청 과제번호	R&D수행과제	규격(모델)	동시 신청 가능 여부
A기업	RP000001	S3000001	00000001	신청 불가
	RP000002	S3000001	00000002	
B기업	RP000003	S3000002	00000003 00000004	신청 가능

- A기업의 경우 1개 R&D 수행과제 결과물인 1개 제품의 2개 모델을 2개 신청과제로 신청하였기 때문에 규격별 개별신청 한 것이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. 또한, 1개의 R&D수행과제에 대하여 여러 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B기업의 경우 동일한 기능의 제품에 규격(모델)만 여러 개로 구성하여 1개 과제번호로 신청하되 신청 페이지 내 '제품관련정보' 란에서 '추가' 버튼을 이용하여 규격(모델)을 원하는 개수만큼 추가 입력한 것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3. 공공성 평가 및 혁신성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?

<답 변>

- 공공성 평가 및 혁신성 평가는 신청제품의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- **(1단계)공공성 평가, (2단계)혁신성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, (1단계)공공성 평가 결과 모든 평가지표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(2단계)혁신성 평가를 실시합니다.**
- 신청시 제출된 서류와 신청기업 대표자(또는 담당자)의 발표·질의응답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,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시 현장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4. 혁신제품 신청제품이 기 수행 R&D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나요?

<답 변>

- 네, 그렇습니다.
중기부 혁신제품은 중기부 소관의 중소기업 R&D사업 완료(우수, 보통)후,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.
- 따라서, 기 수행 R&D과제와 신청제품의 핵심기술 간 연계성이 없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됩니다.

5.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(우수, 보통) 증빙자료(공문 및 확인서)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<답 변>

- R&D 과제 수행 및 최종평가를 받은 관리시스템(SMTECH 또는 IRIS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해당 증빙자료를 통해 ①**최종평가 결과** 및 ②**결과 통보일 확인** 모두 가능해야 합니다.

관리시스템	(필수제출) 증빙자료1	(필수제출) 증빙자료2
SMTECH	최종평가 결과 공문	최종평가결과 확인증* 또는 SMTECH 최종평가결과 안내문** 캡처본
IRIS		IRIS 최종평가결과 안내문*** 캡처본

* SMTECH홈페이지-로그인-고객지원-고객지원센터-확인서발급-최종평가확인 발급신청

** SMTECH홈페이지-로그인-마이페이지-전자공지함-전자알림

*** IRIS홈페이지-로그인-통합업무포털서비스-전자알림

※ ①**최종평가 결과** 및 ②**결과 통보일** 동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증빙자료 인정 불가
(ex)과제수행 확인증 등)

6. 중기부 R&D사업을 수행하였으나, SMTECH 신청 시 수행과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.(ex. 지역특화사업)

<답 변>

- 전산상으로 수행하신 R&D사업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, **수기입력** 하신 후, 제출서류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(우수, 보통) 증빙자료(공문 및 확인서 등)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(4번 문항 참조)

7. 신청 시 물품식별번호는 꼭 있어야 하나요?

<답 변>

- 네, 그렇습니다.
나라장터에서 업체 등록 후 물품식별번호를 먼저 발급받은 후,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SMTECH)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신청 시 물품식별번호를 입력하지 않거나 임의의 번호를 입력할 경우, 사전검토 또는 추후 평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※ 물품식별번호 부여 소요기간 및 접수기간을 감안하여,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※ 동일한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시 지원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다만, 기 R&D 과제 수행 이전에 발급받은 물품식별번호는 R&D과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8.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?

<답 변>

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로써, 공공구매 종합정보망(smpp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☞ 공공구매종합정보망(smpp.go.kr) - 정보조회 -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*
※ 중기간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증명서** 제출 필수
* (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) :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
** (직접생산증명) :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계약에 참여할 때 직접생산 능력의 보유여부를 확인하는 것
- 다만, 「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른 “협업승인”을 받을 경우, 직접생산확인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* 관련 사이트 :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(<https://www.smes.go.kr/cobiz>)
** 전담기관 : 중소기업융합중앙회

9. 물품식별번호 발급 중인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나요?

<답 변>

- 물품식별번호 발급 중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 물품식별번호 발급을 완료한 후 해당 번호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0.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내 제조 유효기간 갱신여부 확인이 필요한가요?

<답 변>

- 네 그렇습니다. 경쟁입찰참가자격증 유효기간 경과는 혁신제품 지정 절차 중 조달 적합성 검토시 부적합 사유에 해당되어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11. 조달청의 조달적합성검토의 기준이 궁금합니다.

<답 변>

-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는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자기 점검표를 기반으로 하므로, 신청 제품의 특허 및 R&D결과(성과)와의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.

<참고>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사항

검토내용		세부검토 내용							
조달 적합 성 검 토	조달 물자 적합 성	「조달사업법 시행규칙」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조달 부적합 품목* 해당 여부 *식료품류, 동·식물류, 농·수산물, 무기 등 총포, 화약류와 그 구성품, 유류 등							
		(물품식별번호 기준) 우수조달제품 다수공급자계약(MAS) 등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여부							
		입찰참가자격등록, 부정당업자제재, 직접생산 등 조달 계약 시 배제요인 확인							
	규격 적합 성	신청제품의 기술 반영 수준, 품질적 필수 요건, 제품의 제원 요소 적합성 검토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내용</th></tr><tr><td>기술요소</td><td>혁신제품 제안 시, 적용된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 등을 활용하여 제품 특징 기재 적합성 검토</td></tr><tr><td>품질요소</td><td>KS, 단체표준, 업체 제시 기준 인용 적합성 여부 및 법정 의무인 증 관련 사항 검토</td></tr><tr><td>제원요소</td><td>혁신제품 제안 제품의 물품식별번호 발급 적합성 여부 검토</td></tr></table>	구분	내용	기술요소	혁신제품 제안 시, 적용된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 등을 활용하여 제품 특징 기재 적합성 검토	품질요소	KS, 단체표준, 업체 제시 기준 인용 적합성 여부 및 법정 의무인 증 관련 사항 검토	제원요소
구분	내용								
기술요소	혁신제품 제안 시, 적용된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 등을 활용하여 제품 특징 기재 적합성 검토								
품질요소	KS, 단체표준, 업체 제시 기준 인용 적합성 여부 및 법정 의무인 증 관련 사항 검토								
제원요소	혁신제품 제안 제품의 물품식별번호 발급 적합성 여부 검토								

◦ (사후조치) 규격 불일치·성능 미충족일 경우 : 규격검토 진행 보류 → 보완 시 규격 검토 재진행

12.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<답 변>

-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시 정부, 공공기관, 지자체 등 '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' 및 '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'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.
- 혁신제품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 간 유효하며, 혁신조달 종합포털 '혁신장터'를 통해 혁신제품 등록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.
- 또한 공공기관, 지자체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제도 및 제품 홍보와 혁신제품지정 기업-공공기관 간의 만남의 장 등 혁신제품의 초기판로 지원 및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후속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.

13. 소프트웨어와 같이 제품의 생산설비 특징이 어려운 경우, (서식3) 생산설비소개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?

<답 변>

- 소프트웨어와 같이 별도의 생산설비가 없는 경우, 생산설비 소개란에 '해당사항 없음'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